



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

9,860 원

최저임금은

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**최저수준을 보장하여**

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

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
하는 제도입니다.

월 환산액 2,060,740원(주 40시간 기준, 유급주휴 8시간 포함)

2024.1.1.~2024.12.31. 적용

0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?

- **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**

다만,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,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- **근로기준법상 근로자(정규직 · 비정규직, 파트타임, 아르바이트, 청소년 근로자, 외국인 근로자 등)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.**

다만,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0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?

- **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**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**3개월 이내**인 사람에 대하여는 **최저임금액의 10%를 감액**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*에게는 수습여부 ·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**최저임금액의 100%를 지급**하여야 합니다.

*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(단순노무종사자)에 해당하는 사람

0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?

-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**매월 1회 이상 정기적**으로 지급하는 임금. 다만,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

■ 통화 이외의 것(현물)으로 지급하는 임금

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

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·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
가산임금,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,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
대한 임금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

■ 2024년부터 ①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②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

“최저임금 월 환산액”이란?

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

•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 9,860원 ×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
(209시간, 최저임금 고시 기준)* = 2,060,740원

*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
시간 수 산정방법 : (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+ 유급주휴 8시간) × 365일 ÷ 7일
÷ 12월 = 약 209시간

【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】

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
지급하는 임금을 종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
근로자의 과반수(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작된 노동조합)의 의견청취 필요

연도	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
미산입 비율	상여금	25%	20%	15%	10%	5%	0%(전부 산입)
	복리후생비	7%	5%	3%	2%	1%	0%(전부 산입)

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

9,860 원



월 환산액 2,060,740원(주 40시간 기준, 유급주휴 8시간 포함)

2024.1.1.~2024.12.31. 적용

04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?

- **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**,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**무효**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
05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

-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「**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**」을 제외하고, 일·주·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
■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(유급주휴시간 포함) : 209시간(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)

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

=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
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

-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

0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?

- 사용자는 「① **최저임금액**, ② **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**, ③ **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**, ④ **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**」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.

※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07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?
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,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.

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

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4년 1월 급여 2,309,250원을 받는 경우

월급명세서	
기본급	1,587,000원
직무수당	130,000원
교통비	100,000원
식대	100,000원
시간외수당	260,000원
상여금	132,250원
계	2,309,250원

※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%
(1,587,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
지급)

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	
기본급	1,587,000원
직무수당	130,000원
교통비	100,000원
식대	100,000원
상여금	132,250원
계	2,049,250원

※ 식대·교통비 및 상여금 전부 산입

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
9,805원(2,049,250원 ÷ 209시간)은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,86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

